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 전문심리위원 참여 의무화〉

■ 김교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913호)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교홍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4. 11. 27.
3. 회부연월일 : 2024. 11.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허법」은 특허심판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기술 전문가가 심판 절차에 참여해 의견(서면, 구두)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특허심판 분쟁의 내용이 점차 복잡·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본 제도가 의무가 아닌 만큼 활용 실적이 저조함. 본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것은 물론 복잡한 기술적 사안을 더욱 면밀하게 다루고, 글로벌 시장에서 자국의 기술과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심리위원의 참여를 통해 전문성을 높여야 함.

이에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에 한하여 전문심리위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4조의2).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사업’에 관한 심판절차에 전문심리위원을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4조의2제1항 단서 신설).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4조의2(전문심리위원) ① 심판장은 직권에 따른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심판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54조의2(전문심리위원) ① ----- ----- ----- ---. 다만,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사업에 한해서는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154조의2에 근거한 전문심리위원제도는 특허심판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기술 전문가를 특허심판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1년도에 도입되었음.¹⁾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제도가 도입된 후 2022년 13건, 2024년 5건 등 3년간 26건의 심판 청구사건에 전문가가 활용된 것으로 나타남.

1) 참고자료(전문심리위원제도 개요) 참조

[표 2] 연도별 전문심리위원 활용 심판사건 현황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건수	-	13	8	5	26

자료: 특허청

이에 대하여 특허청은 현장 경험 등 보완이 필요한 기술의 경우 외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특허심판 청구사건이 전문가 의견 없이도 심판관이 처리할 수 있는 기술 수준에 해당한다는 설명임.

한편, 국가전략기술과 같은 중요한 기술 분야의 경우 심판부의 기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²⁾ 및 첨단전략사업 분야 특허심판에 외부전문가인 전문심리위원의 참여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동 분야 특허심판의 전문성 제고 및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다만, 모든 국가전략기술 관련 특허심판 청구사건³⁾에 대해 전문가를

2) 참고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국가전략기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제2조(정의) 1. “국가전략기술”이란 외교·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이동수단,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12개 분야가 선정됨.

활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고, 국내외 입법례의 경우 재판에서의 전문가 활용을 법원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특허청은 전문심리위원제도를 의무화할 경우 심리 절차 지연⁴⁾과 소송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참고로, 국내 입법례의 경우 「민사소송법」 등에서 소송절차에서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심리위원제도, 기술심리관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고,

[표 3] 외부전문가 활용 관련 국내 입법례

법률	관련 제도 및 근거	참여방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전문심리위원제도) 법원이 분쟁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법원 외부의 관련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서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및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재판부 직권 또는 당사자 등 신청에 따른 재판부 결정
법원조직법	(기술심리관제도) 기술전문가인 기술심리관을 두어 특허소송의 사실심리에 참여하고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제도(제54조의2)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허법	(전문심리위원제도) 심판관의 기술전문성을 보완하고 외부 전문가의 공정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전문심리위원을 심판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제154조의2)	심판장 직권

3) 특허청에 의하면, 국가전략기술 관련 특허심판 청구사건은 연간 600여건 정도임.

4)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결정, 심판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의 절차가 추가로 필요함.

해외 입법례의 경우 미국, 유럽, 일본 등도 심판절차에서 외부전문가 제도를 두고 있는데, 당사자의 신청, 심판합의체의 직권 등으로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⁵⁾

문 의 처

02)6788-5468

5) **(미국)** 심판편람(Consolidated Trial Practice Guide)에 "신청시 또는 심판합의체가 직권 또는 허용하는 경우 전문가 증언을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

* Expert testimony may be submitted with the petition, preliminary response, and at other appropriate stages in a proceeding as ordered or allowed by the panel overseeing the trial."

(유럽) 당사자가 입증책임 및 증거제출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심판부에서 기술 전문가의 조언(증언) 없이 심결을 내릴 수 없을 때만 전문가증언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

* Case Law of the Boards of Appeal > 2.4.3. Expert Opinions (Article 117(1)(e) EPC

(일본) 일본 특허심판부의 심판편람에는 '특허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필요 시 서면으로 전문가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반대 당사자는 제출된 의견서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

참고

전문심리위원제도 개요

□ 전문심리위원 제도('21. 4. 20. 공포*, '21. 10. 21. 시행)

- 특허심판원이 전문적인 기술분야의 사건을 심리할 때 심판장의 필요에 의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특허심판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

특허법 제154조2(전문심리위원) ① 심판장은 직권에 따른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심판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⑥ (생략)

- 인공지능,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11개 기술분야*에 약 130명의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서면 제출 또는 구술심리 출석을 통해 기술적 쟁점에 대하여 제시된 의견을 참고

* 인공지능, 무선통신(5G/6G), 반도체(포토, 식각, 증착 기술), 핀테크, 동영상·오디오 압축(MPEG), 바이오헬스, 이차연료전지, 자율주행, 변속기, 로봇 제어, 지반안정화

전문심리위원 지정 및 활용 절차



- 전문심리위원 후보자의 선정기준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65조의3*에, 운영절차는 ‘특허심판원 전문심리위원 운영규칙’에 각각 규정

* 특허법 시행규칙 제65조의3(전문심리위원 후보자의 선정 등)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장이 법 제154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할 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심리위원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작성·관리한다.(생략)....

□ 전문심리위원 참여 요건

- (직권에 의한 결정) 특허심판원의 심판장은 직권*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심판절차에 참여시킬 수 있음
 - * 전문심리위원은 심판절차의 진행에 관하여 보조자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은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은 특허심판원 심판장이 직권으로 결정할 성질의 것
 - 당사자는 필요에 따라 의견서를 통해 전문심리위원 참여가 필요함을 주장하여 심판장이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검토하도록 할 수 있음
- (참여할 수 있는 심판 절차) 특허, 실용신안에 관한 심판사건이라면 전문심리위원 참여의 기술분야가 제한되지 않음
- (참여의 필요성) 기술적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심판절차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
 - * 기술적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우는, 첨단 기술분야, 현장의 지식·경험이 요구되는 기술과 같이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심판관이라도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한 기술분야 등에서 기술 내용이 난해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의 주장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쟁점이 불명확한 경우 등

□ 기술분야별 전문심리위원 활용 현황

구분	기술분야(건수)					
	동영상·오디오 압축	무선통신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계
22년	4	3	4	1	1	13
23년	6	1	1	-	-	8
24년	2	3	-	-	-	5
합계						26

- 제도 도입 이후 중요사건을 중심으로 외부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총 26건('21. 10월 ~ '21. 9월)에 대하여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
 - * 제도 도입 이후에 몇 건을 사용했는가의 문제가 아니고, 필요성에 따라 제도를 갖추고 필요할 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중요

□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사업의 특허심판청구 건수

-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사업*의 특허심판청구 건수는 '20년 609건, '21년 672건, '22년 550건, '23년 613건 등으로 분석됨
 -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AI),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12개 분야